문서번호	재무과-105959
결재일자	2015.12.2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10399호

주무관	재산관리팀장	재무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선주	김유미	김종구	代정광희	김경호	12/28 김기동

협 조		
	도시관리국장	이기배
	안전건설교통국장	김해성
	지적과장	남궁완
	건설관리과장	구자호

구유재산심의회 구성·운영 변경계획(안)

광진구 GWANGJIN-GU

기 획 경 제 국

(재 무 과)

구유재산심의회 구성·운영 변경계획(안)

구유재산심의회 내부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부서장이 위원인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해당국장으로 구성위원을 변경하고, 또한 심의회 안건 상정을 정례화 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Ⅰ 위원구성 변경(안)

□ 관련근거

○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제3항

③ **위원은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**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**구청장이 임명** 또는 위촉하되,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5항

⑤ 심의회에 **간사와 서기 각 1명**을 두되 **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**

□ 변경(안)

○ 내부위원 변경 (5명 → 4명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내부위원	부구청장(위원장)	좌동	※ 간사 : 재무과장 서기 : 재산관리팀장
	기획경제국장(부위원장)	좌동	
	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관리과장	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	
민간위원	변호사(1), 회계사(1), 평가사(2), 전직공무원(1)		

▸ 제안 부서장이 위원인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해당국장으로 변경

○ 민간위원 자격사항 정비

- 상위 법령 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: 12월 말 공포예정

- 시행규칙 제6조 제1항

현 행	개 정 안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	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·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	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	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

II 안건상정 정례화(안)

□ 현 황

○ 사업추진의 시급함과 민원을 이유로 수시 심의회 개최요청에 따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원활한 운영 곤란

○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매각 전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 유발

□ 문제점

○ 빈번하고 불규칙한 심의회 개최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참석에 대한 부담을 주고 1~2개 안건 심의로 비효율적 운영

○ 긴급성으로 인한 서면심의는 심도있는 자문이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 운영 및 자문의욕 저하 우려

○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적정여부와 기준가격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사정 등으로 장기간 소요

□ 개선(안)

○ 구유재산심의회 개최 정례화

- 개최시기 : 격월 둘째주 월요일 (※긴급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 가능)
- 시 행 일 : 2016. 1. 1.~

○ 심의사항중 생략가능 한 경우 자체 방침 후 시행 : 해당 부서

- 근 거 :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2

○ 심의회 개최 전 안건 상정사업 정기 확인

- 제출자료 요청 공문과 별도로 실시 : 월 1회

○ 심의회 상정안건 요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

- 전부서 공문 발송, 행정포털 업무공지 게시 등 적극 홍보안내

□ 심의 생략 가능(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항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·처분의 적정여부

-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대상(개별법에 따른 재산의 취득·처분)

○ 「건축법」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·처분의 적정여부

- 주거지역 : 60㎡, 상업·공업지역 : 150㎡, 녹지지역 : 200㎡, 그 외지역 : 60㎡

○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·처분의 적정 여부

○ 330㎡ 이하 토지(해당 토지의 건축물 포함)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
Ⅲ 추진일정

○ 계획 시달 및 상정안건 요건 홍보 : 12월 중

○ 시행 기준일 : 2016. 1. 1. 부터

구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

연 번	비 고	직 위	성 명	성 별	직업(경력)	비 고
1	내부위원	위 원 장	**김경호**	남	부구청장	
2	〃	부위원장	**길수철**	남	기획경제 국 장	
3	〃	위 원	**이기배**	남	도시관리 국장	
4	〃	위 원	**김해성**	남	안전건설 교통국장	
5	민간위원	부위원장	**서규영**	남	고문변호사	
6	〃	위 원	**최종성**	남	감정평가사	
7	〃	위 원	**김영규**	여	공인회계사	
8	〃	위 원	**우정미**	여	감정평가사	
9	〃	위 원	**이종선**	남	전 재무과장	